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5] <개정 2023. 6. 9.>

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제124조 관련)

1. 시설기준

시설구분	기준면적	시설내역
가. 주차장	2,300m ² 이상	경매참가자동차의 보관·주차 장소
나. 경매실	140m ² 이상	1) 경매참가자용 좌석: 70석 이상 2) 전광판: 1대 이상 3) 환등기: 1대 이상 4) 방송시설: 1실 이상
다. 사무실		참가 접수, 등록, 안전점검 결과의 조회, 경매가격의 조정 등을 위한 시설
라. 성능점검·검사시설	50m ² 이상	1) 피트 또는 리프트: 인상능력(물건을 끌어올리는 능력) 3톤 이상 2) 휠 밸런서 3) 압력측정기: 0~70kg/cm ² 4) 개라지 잭(garage jack): 인상능력 1.5톤 이상 5) 전류시험: 0~±60A 6) 타이어 게이지: 0~84kg/cm ²

주) 1) 성능점검·검사시설은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사실을 서류를 통해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 중에는 해당 점검·검사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와의 계약을 통해 성능점검 수행이 가능하고, 그 사실을 서류를 통해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중에는 성능점검·검사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정비 업무, 자동차검사 업무 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춘 사람

다.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인받은 자동차 진단평가에 관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정비 업무, 자동차검사 업무 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